

제2절 주택의 구조 및 설비기준

2.1 주택의 구조 및 설비기준

2.1.1 기준척도(M.C)(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3조)

구 분	치 수 및 기 준 척 도
치 수 및 기준척도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단,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적용)
거 실 및 침 실	· 평면 각 변의 길이 : 30cm 단위 (단,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은 10cm 단위 가능) ·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2.2m이상 (10cm 단위) · 층높이 : 2.4m이상 (10cm 단위)
기 타 실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 : 10cm 단위 (단,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 호칭치수 적용)
기 타	·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 치수에 의할 것.(단,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함) · 기타 사항은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기타실 : 부엌 · 식당 · 욕실 · 화장실 · 복도 · 계단 및 계단참 등

2.1.2 세대간의 경계벽(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 ①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cm이상인 것
 -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cm이상인 것
 - ㉢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cm이상인 것
 - ㉣ 제㉠호 내지 제㉢호의 것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당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공동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

- ④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3 승강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및 규칙 제4조)

-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 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매 세대 당 0.3인(독신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0.15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인 이하의 단수는 이를 1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 ㉡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매 세대 당 0.2인(독신자용 주택의 경우에는 0.1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 ②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③ 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 ㉡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 중 한변은 1.35m이상, 다른 한변은 1.6m이상일 것
- ㉢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 마다 설치할 것
- ㉣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 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 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 ⑤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 승강기·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 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세대조합별 승강기 설치기준(주공자체기준)

구분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0층	15	15	15	15	15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1층	15	15	15	"	"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2층	15	15	"	"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3층	15	15	"	"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4층	15	15	17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5층	15	"	17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
16층	15	"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15
17층	15	17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	17+15+15
18층	15	17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9층	15	17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20층	"	17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21층	"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17+15+15
22층	"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17+17+15
23층	17	15+15	17+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17+15+15	17+17+15
24층	17	15+15	17+15	17+15	17+15	"	17+15+15	17+15+15	17+15+15	17+17+15	17+17+15
25층	17	15+15	17+15	17+15	17+15	"	17+15+15	17+15+15	17+17+15	17+17+15	17+15+17+15

- 1) 청색: ① 13→ 15인승 변경
 2) 적색: ③ 관련법에 따라 승강기 인승 조정
 * 단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 기준 조정 가능

※ 84㎡초과/ 표 외 구간(9층이하, 26층이상, 13호 조합이상)의 산정기준

구분	복도형	계단실형	비고
세대수	100세대까지 1대 설치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대 추가 설치	계단실마다 1대 이상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탑승 인원수	4층 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2인	4층 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3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면적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1대 설치 1대에 3,0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매 3,000㎡이내 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단,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 형별(복도, 계단실)로 세 조건 모두 충족되는 대수 및 인승 산정
 2) 상기 방법에 의한 산출 대수가 1대일 경우, 4층이상 세대수가 52호를 초과하면 2대로 설계
 3) 단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기준 조정 가능

※ 상기 세대조합별 승강기 설치기준은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며 주차장, 연

립주택 등 기타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최소인승은 단지여건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적용할 것

2.1.4 계단(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①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계단의 종류	유효 폭	단 높이	단 너비
공용 계단	120cm 이상	18cm 이하	26cm 이상
세대내 계단 또는 건축물의 옥외계단	90cm 이상 (세대내 계단의 경우는 75cm 이상)	20cm 이하	24cm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의 계단참 및 난간

- ㉠ 높이 2m를 넘는 계단(세대내 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m(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경우는 3m)이내마다 당해 계단의 유효폭 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cm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 ㉡ 높이 1m를 넘는 계단으로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단폭이 3m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도 폭 3m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것은 그러하지아니하다.
-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

- ㉠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 ㉡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 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 ㉢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 ㉣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9조 참조)

2.1.5 복도(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

① 공동주택의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

- ㉠ 갓복도 : 120cm 이상
- ㉡ 중복도 : 180cm 이상. 다만, 당해 복도를 이용(주택에서 건축물 밖으로 나가거나 계단·승강기 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단거리인 경우)하는 세대수가 5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50cm 이상

②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

- ㉠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m 이내마다 1개소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 설치
- ㉢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것.

2.1.6 난간(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

- ①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또는 도금이나 녹막이 등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 가능
- 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
 - ㉠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 부터 120cm이상, 다만, 건축물의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은 90cm이상
 - ㉡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cm이하.
 - ㉢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cm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
- ④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

2.1.7 화장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 ① 주택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
- ② 주택단지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2.1.8 구조내력 등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

주택의 구조내력·방화·위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건축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55조 및 제59조와 건축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준용

2.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2.1 공동주택 적용사항

● : 의무사항

구 분	공동주택 일반 사항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300세대미만인 경우 제외)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아동관련 시설, 기타사회복지시설>로 분류 * 시행령 별표1,2,참조
접근로	●	●	●
건축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	●
출입구(문)	●	●	●
복도	설치 가능	●	(당해용도 바닥면적 500㎡미만은 권장)
계단, 장애인이용에스컬레이터,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	(당해용도 바닥면적 500㎡미만은 권장)
장애인용 화장실	미설치	●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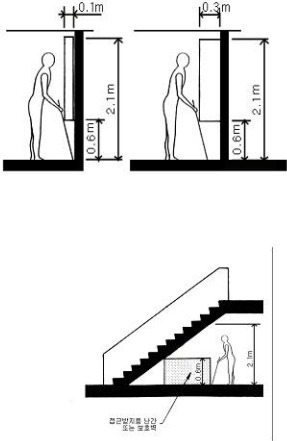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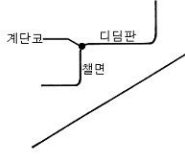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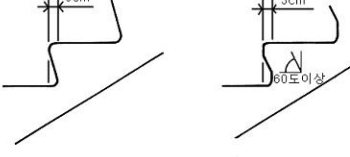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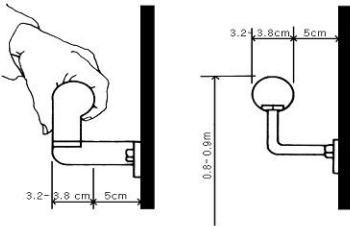
2.2.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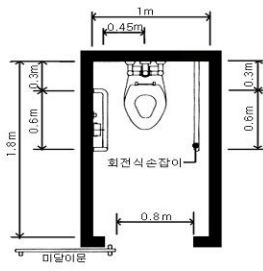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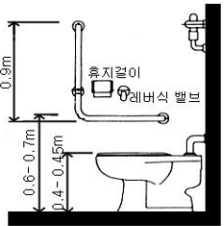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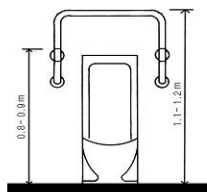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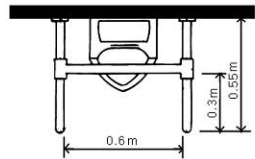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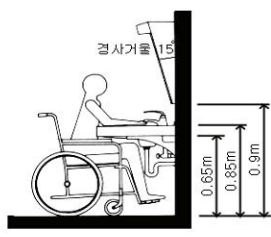
구 분	공동주택 일반사항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약국, 일반목욕장, 슈퍼마켓, 일용품등의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원, 금융업소,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 (총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 경우 제외)	좌향의 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 시설 (시행령 별표 1, 별표2 참조)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아동관련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함
접근로	(1)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미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접근로를 (1)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좌동	좌동
건축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좌동	좌동

구 분	공동주택 일반사항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약국, 일반목욕장, 슈퍼마켓, 일용품등의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원, 금융업소,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 (총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 경우 제외)	좌향의 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시행령 별표 1, 별표2 참조)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아동관련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함
출입구 (문)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권장)
계단, 장애인인용 에스컬레이터,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의 건축물중 6층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좌동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권장)
장애인용 화장실	미설치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권장

2.2.3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구 분	세부기준
접근로 (보도등)	가. 유효폭 : 1.2m 이상 나. 기울기 : 18분의 1 이하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 다. 경계 - 보도등과 차도를 분리할 수 있는 연석·울타리 등 공작물 설치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질감이 다른 바닥재시공) 라. 재질과 마감 -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보도블록 포장은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 -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간격이 2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함 마. 보행장애물 - 보도등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 - 가로수는 지면에서 2미터까지 가지치기.
건축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가. 턱낮추기 :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1 제11호 및 제12호 적용.
출입구 (문)	가. 유효폭 - 통과유효폭 : 0.8m이상 -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 : 1.2m이상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 회전문 설치불가 -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불가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이상 확보 -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출입문의 손잡이 위치 : 바닥면으로부터 0.8m~ 0.9m사이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m높이에는 방아쇠를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라.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또는 질감이 다른 바닥재 시공.

구 분	세부기준
복도	가 유효폭 : 1.2m이상 (중복도형 : 1.5m이상) 나 바닥 -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설치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 사용) -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 또는 질감이 다른 바닥재 시공. 다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 (다만, 유효높이 2.1미터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계단	가 계단 및 참의 유효폭 : 1.2m이상 (옥외피난계단은 0.9m이상). 나 디딤판과 철평면 - 반드시 철평면 설치 - 디딤판 너비 : 0.28m이상 - 철평면 높이 : 0.18m이하 - 철평면의 기울기 : 60도이상 - 계단코 돌출길이 : 3cm미만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설치 제외). -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이상의 수평손잡이 설치.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부착 - 기타 세부기준은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 적용. 라 재질과 마감 - 계단코 : 줄눈넣기 또는 경질고무류등의 미끄럼방지재 마감 (바닥전체를 미끄러지지않는 재질로 마감한경우 제외) - 계단 시·중점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 또는 질감이 다른 바닥재 시공.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유효폭 : 1.2m이상 - 참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내마다 설치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공간 확보 나 기울기 - 높이 1m 초과 : 12분의1이하 - 높이 1m 이하 : 8분의1이하 (단, 옥외경사로는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함) 다 손잡이 - 길이 1.8m이상 또는 높이 0.15m이상인 경우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설치 제외) - 시·중점에 수평손잡이 0.3미터이상 연장설치 - 손잡이 높이 : 0.8m~0.9m - 손잡이 지름 : 3.2cm~3.8cm - 벽과 손잡이의 간격 : 5cm내외  라 재질과 마감 :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마감

구 분	세부기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 바닥 단차 제거 및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마감 - 출입구(문) 0.3미터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또는 질감이 다른 바닥재 시공. - 출입구(문)옆 벽면의 1.5m높이에는 점자표시판 부착 (남·녀 구분용) - 세정장치·수도꼭지 등 :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
	나. 대변기 - 칸막이 유효바닥면적 : 신축시에는 1.4m×1.8m이상 기존시설에 설치할 경우에는 1.0m×1.8m이상 - 출입문 유효폭 : 0.8m 이상 - 출입문 형태 : 미닫이문, 접이문을 권장하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가능 (단,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 가능) -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함 - 좌대높이 : 바닥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 - 손 잡 이 : 수평손잡이는 양쪽설치, 수직손잡이는 한쪽 설치 가능 - 수평손잡이 : 바닥으로부터 0.6m이상 0.7m이하에 설치하고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 - 수직손잡이 : 길이는 0.9m이상, 아랫부분이 바닥으로부터 0.6m내외의 사이에 오도록 벽 또는 바닥에 고정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연결 설치 가능) -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설치
	 
	다. 소변기 - 수평손잡이 : 높이는 0.8m이상 0.9m이하, 길이는 벽으로부터 0.55m내외, 간격은 0.6m내외 - 수직손잡이 : 높이는 1.1m이상 1.2m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는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세면대 - 상단높이 : 바닥으로부터 0.85m이하 - 하단높이 : 바닥으로부터 0.65m이상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동번호

① 부여기준

- ㉠ 단지번호부여는 관리단위별로 구분
- ㉡ 동번호 순서는 단지의 주 진입구에서 시작하고 주도로를 따라 한방향으로 계속 연결하여 부여
- ㉢ 도로가 분기되는 지점에서는 동번호의 시종점 식별이 가능토록 설치
- ㉣ 단지규모 및 도로형태에 따라 동번호를 군집화
- ㉤ 저층과 고층의 혼합지구는 층수별로 군집화
- ㉥ 연차사업지구는 사업순서에 따라 군집화

② 표기방법

구 분	표 기 방 법	비 고
아 파 트		3 : 단 지 번 호 05 : 동 번 호
부 대 복 리 시 설		P : 시설고유번호 2 : 시 설 번 호

③ 시설고유번호

시 설 명	기 호	시 설 명	기 호
판 매 시 설	P	공 중 변 소	W
관 리 동	K	고 가 수 조	H
목 욕 장	M	오 수 정 화 시 설	O
유 치 원	U	지 하 저 수 조	G

※ 동일시(市)에 연차지구 개발인 경우(근접한 경우)에는 동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ex) '94 서울 홍길동(1)지구인 경우 101, 102……

'94 서울 홍길동(2)지구인 경우 201, 202……